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"기준수위"란 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수위를 말하며,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.</p> <p>가. ~ 라. (생략)</p> <p>마. "계획홍수위"란 하천시설물 계획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 흐를 때의 수위를 말한다.</p> <p>6. ~ 9. (생략)</p> <p>10. "보 내"란 <u>법에 따라 지정·고시된</u> 하천구역 중 보의 관리수위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.</p> <p>11. · 12. (생략)</p> <p>제5조(보의 용도) 보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----- ----- ----- - <u>말하며 「하천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.</u></p> <p>6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<u>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결정·고시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1. ·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보의 용도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|

4. 하천생태계 건강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맑고 풍부한 물 확보

5. (생략)

<신설>

제7조(보 운영의 원칙) ① 보 관리자는 홍수시 및 갈수시를 제외하고는 관리수위와 상한수위내에서 수위를 유지하고 하천관리유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제8조(보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) ① (생략)

② 보 운영계획은 월별 운영 실적(저수위, 유입량, 각 시설물을 통한 방류량, 발전량), 운영계획(예상 유입량, 목표수위, 발전량 및 방류량), 수질관리계획 및 보

4. -----

-- 확보와 수질 개선

5. (현행과 같음)

6. 생활·공업·농업용수 등 용수공급

제7조(보 운영의 원칙) ① -----
--- 홍수시·갈수시·용수공급·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 운영의 경우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보 관리자는 가동보 수문에 의한 방류를 시행하는 등 보의 수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수위조정으로 인한 지하수위, 어도 및 취·양수장 기능의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단, 보 운영계획에 수질 관련 사항을 포함할 때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9조(홍수경계체제) ① ~ ⑤ (생 략)

⑥ 보 관리자가 가동보 수문조작을 통해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방류개시 전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, 방송·사이렌 또는 확성기 등을 통하여 방류시기 및 주의사항을 하류주민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<신 설>

--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홍수경계체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3시간 전까지 ---
-----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방송, 사이렌, 확성기, 문자메시지 ----- 알리는 -----
----- 조치(이하 "통보 등"이라 한다)---. 다만, 급격한 수위의 상승 등으로 보 관리자가 긴급하게 방류해야 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방류개시 전까지 통보 등을 할 수 있다.

1. 보 관리자가 통보 대상자 요청시 관할 시·군·구에서 보 관리자에게 제출한 하류주민
2. 보 관리자가 통보 대상자 요

<신 설>

<신 설>

제13조(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) 보 관리자는 수문조사 업무담당 직원이 「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6조(경보방송시설) ① 보 관리자는 가동보 수문방류를 할 때에는 음성방송, 싸이렌 또는 확성기 등을 통해 하류주민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보방송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청시 하천에서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보 관리자에게 제출한 이해관계자

3. 보 관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, 전화로 보 관리자에게 통보 등을 직접 요청한 자

⑦ 보 관리자가 제6항에 따른 통지 등을 한 후 방류계획이 변경된 경우, 보 관리자는 지체없이 변경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대상과 방법은 제6항을 준용한다.

제13조(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) -----

- 「하천법 시행령」 제13조-----
-----.

제16조(경보방송시설) ① -----

----- 사이렌 -----

② ~ ④ (생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